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상정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2005. 5. 1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2005. 1. 5. 법률 제7332호) 되고, 표준안(2005. 3. 16)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10조, 제12조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30조)
- 임대주택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 범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를 건축할 경우 및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세의 25 퍼센트를 경감함.(안 제11조)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재산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연금관리공단의 임대사업의 기준은?</p> <p>○ 지방세법 개정예 따라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에 따른 홍보 실시 여부는?</p>	<p>○ 국내에서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를 말함.</p> <p>○ 시, 구, 동 전 홍보 채널을 동원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음.</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72호
의결 년월일	2005.5.19 (제119회)

제출년월일 : 2005. 5. 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 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2005. 1. 5. 법률 제7332호)되고, 표준안(2005. 3. 16)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조 내지 제10조, 제12조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4조, 제26조, 제30조)
- 나. 임대주택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고, 감면범

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60㎡초과 149㎡이하를 건축할 경우
및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세
의 25퍼센트를 경감함.(안 제11조)

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경우 재산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변경함.(안 제14조)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시세감면조례”를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6조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항 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을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

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 단서외의 부분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

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중 “1,000분의 3을”를 “1,000분의 1.5를”로 한다.

제15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경감하고,”로 한다.

제17조 제목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시행용”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제18조 단서외의 부분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며”를 “경감하고”로 한다.

제20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3조의2 단서외의 부분 및 제24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각각 “재산세”로 한다.

제26조·제30조 제목 및 동조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며, 제3조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하고, 제5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제6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하고, 제7조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한국노동교육원

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하며, 제8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재 보호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하며, 제10조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주민등록법”을 각각 “「주민등록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으로,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으로,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시행규칙」”으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4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15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제15조의2중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18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19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하고, 제20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21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하고, 제22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하며, 제23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제25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28조 및 제29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부천시시세감면조례</u>	<u>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u>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②·③ (생략)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u>재산세</u>,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u>주거용 부동산</u>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u>축사용 부동산</u> 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u>주택</u> <u>재산세</u>,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재산세</u>,

현행	개정안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p> <p>.....</p> <p>.....</p> <p>.....</p> <p>.....</p> <p>.....경감한다.</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7. (생략)</p>	<p>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 재산세.....</p> <p>.....</p> <p>.....</p> <p>.....</p> <p>.....</p> <p>.....</p> <p>1.~7. (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1. (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p> <p>.....</p> <p>1.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재산세</u>와 <u>종합토지세</u>를 면제한다.</p> <p>1.~3. (생 략)</p>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u>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u>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u>취락정비계획</u>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u></p>	<p>.....</p> <p>.....<u>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u>에 대하여는 <u>주택</u>.....</p> <p>.....</p> <p>.....<u>재산세</u>.....</p> <p>.....:</p> <p>1.~3. (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p> <p>.....</p> <p>.....</p> <p>.....</p> <p>.....</p> <p>.....<u>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에 대하여는 주택.....재산세</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p>

현행	개정안
<p>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p>	<p>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p>

현 행	개 정 안
<p>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p>	<p>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 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p>

현행	개정안
	<p>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7조(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p>1. <u>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u>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u>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u>을 경감한다.</p> <p>2. <u>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u>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u>시장정비사업시행용</u>..... <u>재산세</u></p> <p>2. <u>시장정비사업시행</u>.....</p>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p>	<p>제18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p>

현 행	개 정 안
<p>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u>재산세·종합토지세</u>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u>재산세</u>.....</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u>경감</u>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u>경감</u>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u>경감</u>하고,.....</p>

현행	개정안
<p>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 <u>재산세</u>..... </p>
<p>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p>	<p>2.<u>재산세</u>..... <u>재산세</u>..... </p>

현행	개정안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p>	<p>3.<u>재산세</u>.....</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 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 당하는 <u>재산세와 종합토지세</u> 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4.<u>재산세</u>.....</p>
<p>제23조의2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 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 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 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동 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p>	<p>제23조의2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 면)</p>

현행	개정안
<p>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대해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p>